

복지제도 개선사항

1. 단체보험 및 의료비 지원 제도 변경

- 1) 재해장해에 따른 보상 수준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.
- 2) 의료비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
 - ①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은 직원 본인 입원으로 한정한다.
 - ② 직원 본인 통원 및 가족 입원·통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급여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가족 합산하여 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한하여 회사에서 지원한다.
단, MRI/CT촬영비는 본인 부담액의 30%를 지원한다.
- 3) 시행시기는 2013.1.1자로 하며,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
2. 건강검진 선택권 부여

- 1) 선택적복지를 확대하여 건강검진포인트(15~45만Pt)를 부여하여 검진시 본인이 정산하도록 한다.
- 2) 포인트 부여 대상 : 1.1자 재직 기준으로 검진시행일 재직자
- 3) 선택권 부여 방법
 - 직원의 최소 검진 비용(A형 15만Pt)은 의무 검진으로 하며
 - 연령에 따른 B형(20만Pt), C형(30만Pt) 대상자가 A형 또는 B형 검진시 잔여포인트와 배우자 건강검진비용(15만Pt)은 자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.
- 4) 적용시기는 2013.1.1자로 하며,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